

공간관리규정

4-5-9

규정번호	4-5-9
제정일자	2012.6.4
최근개정	2026.3.23
개정차수	6차 개정
관리부서	기획평가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제반 시설공간(이하 “공간”이라 한다)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체계를 수립하여 공간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,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공간의 배정, 조정 및 용도변경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- 1. 공간 : 학교 내에서 인적·물적 자원이 점유하여 활동 또는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이는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교지의 건물 내·외부의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.
- 2. 기준 : 각 공간의 용도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(학부 및 학과, 행정부서 등)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기준을 말한다.
- 3. 공간배정 : 교육, 연구, 학생활동, 행정업무, 사업목적 등에 필요한 공간을 학교방침에 따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공간사용 : 학내 구성원이나 외부단체 등이 교육, 연구, 학생활동, 행정업무, 사업목적 등을 위하여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공간용도 : 공간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- 가. 교육기본시설 : 강의실, 실험실습실, 교수연구실, 행정실, 세미나실, 학술정보원(도서관), 학생회관,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(개정 2018.08.27)
 - 나. 지원시설 : 체육관, 강당, 정보통신시설, 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
 - 다. 연구시설 : 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
 - 라. 부속시설 : 박물관, 체육시설, 숙소, 산학협력단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, 학교기업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, 전시실, 기타 시설
- 6. 공간관리 :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배정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2 장 공간배정·관리 및 운영

제 3 조 (공간배정부서) 기획실 기획평가팀은 공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, 배정기준 마련, 배정, 조정 및 용도변경과 특별히 관리부서가 명시되지 않은 공간에 대한 업무의 유권해석 등을 담

4-5-9 공간관리규정

당한다.(개정 2018.08.27)

제 4 조 (공간관리부서) 공간별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.

1. 기획실 기획평가팀 : 교수연구실, 학과사무실 및 학과회의실 등(개정 2018.08.27)
2. 교무처 교무입학팀 : 일반강의실, 교수휴게실 등(개정 2018.08.27)
3. 산학협력처 산학협력팀 : 실험실습실, 산학협력단(학교기업) 등(개정 2018.08.27., 2018.12.10)
4. 학생지원처 학생복지팀 : 학생자치기구실, 학생휴게실 등(개정 2018.08.27)
5. 사무처 구매시설팀 : 공간 현황관리, 강당, 세미나실, 회의실, 편의·복지공간 등 (개정 2018.08.27)

제 5 조 (공간배정원칙·사용제한) ① 공간배정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② 전 항에서 정한 바를 사전 승인 없이 초과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공간관리부서에서 행·재정적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조(공간배정·조정·용도변경 절차) ① 공간의 신규 또는 추가배정이나 용도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공간조정요청서를 작성 후 공간관리부서를 경유하여 공간배정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.(개정 2025.12.1.)

② 공간관리부서는 요청업무에 대하여 자체 관리공간 범위 내에서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간배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조정이 불가한 경우 공간관리부서는 도면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간배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공간관리부서가 명시되지 않은 공간의 배정, 조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공간배정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공간배정부서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간배정·조정·용도변경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, 조치된 내용은 공간관리부서에 통보한다.(신설 2025.12.1.)

⑥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한 공간조정요청은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(신설 2025.12.1.)

⑦ 배정받은 공간에 대해 배정 공간의 면적, 구조 등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.(신설 2025.12.1.)

1. 공간 배정 목적 및 용도의 변경이 없는 단순명칭 변경(신설 2025.12.1.)
2. 공간에 대한 실 번호 부여(신설 2025.12.1.)
3. 교수연구실 상호 교환, 연쇄 이동 및 조정(신설 2025.12.1.)
4. 신입교원 교수연구실 신규배정 및 퇴직교원 공간 회수(신설 2025.12.1.)
5.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·행사개최 등에 의한 임시적 공간조정(신설 2025.12.1.)
6. 20개소 미만 또는 합계 600㎡미만의 공간배정·조정·용도변경(신설 2025.12.1.)
7. 별표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간 또는 대규모 공간의 연면적 10% 이하의 공간배정·조정·용도변경(신설 2025.12.1.)

제7조(공간배정 결정·통보) ① 공간배정 결정은 공간배정부서의 검토와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

4-5-9 공간관리규정

를 거쳐, 총장이 결정한다.(개정 2025.12.1.)

② 공간배정부서는 배정결과를 공간관리부서에 통보하며, 공사 및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.

제8조(공간사용 조정) <삭제(2025.12.1.)>

제 9 조 (사용료) ① 개인 또는 단체에 임차하여 사용한 공간은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사용료와 관련된 제반 업무는 구매시설팀에서 담당한다.(개정 2018.08.27)

제 3 장 공간관리위원회

제10조(구성)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교무처장, 산학협력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8.12.10.)

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6.3.23.)

④ 공간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 11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

1. 공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
2. 공간 배정기준, 사용기간, 조정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

3. 기타 공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(개정 2025.12.1.)

1. 제11조에 명시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(신설 2025.12.1.)

2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(신설 2025.12.1.)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3 조 (운영) 회의는 기획실 기획평가팀에서 주관하며, 간사는 공간관리담당으로 한다. (개정 2018.08.27)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직제규정) <2013.7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4-5-9 공간관리규정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4> <생략>

<5> 공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4조, 10조, 13조의 “기획홍보팀, 산학협력처 산학협력팀, 학생처 학생팀, 사무처 시설관리팀, 산학협력처장, 학생처장”을 “기획·예산팀, 산학협력처 산학협력팀, 학생지원처 학생복지팀, 사무처 총무팀, 산학협력처장, 학생지원처장”으로 한다.

<6> - <30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[별표·별지 서식 신설]

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6조제1항·제5항·제6항·제7항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·제5호·제6호·제7호, 제7조제1항, 제8조, 제12조제1항1호·제2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(제10조제3항)

4-5-9 공간관리규정

[별지 서식] <신설 2025.12.1.>

공간조정요청서

부 서 장 (인)

요청일시		요청부서		요구구분	신규 ☐ 조정(추가배정·용도변경) ☐ * 해당되는 곳 체크(√)표시
확보희망 공간위치	(건물명 및 호수)			소요면적	
사용희망기간				기존사용면적 초과여부	예 ☐ 아니오 ☐
공간명칭				공간용도 (사용목적 및 필요성)	
요청사유					
소요면적 산출근거					
자체여건 조사결과					
공간관리부서 사전 협의결과	협의내용 : 공문번호 : 관련내용 :				
공간배정 후 성과계획					

※ 용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작성

4-5-9 공간관리규정

[별표] <신설 2025.12.1.>

구분	공간명	연면적	연면적 10%
대규모 공간 (연면적 2,000㎡ 초과)	본관 및 인문사회관	17,579㎡	1,757㎡
	공학관 및 도서관	19,861㎡	1,986㎡
	실험실습 및 연구동	4,340㎡	434㎡
	사회교육관	10,387㎡	1,038㎡
	예체능관 및 체육관	16,937㎡	1,693㎡
	지하주차장	14,867㎡	1,486㎡
	교육관	5,074㎡	507㎡
소규모 공간 (연면적 2,000㎡ 이하)	창업센터1	447㎡	-
	창업센터2	246㎡	
	제1생활관A동	322㎡	
	제1생활관B동	331㎡	
	제1생활관C동	331㎡	
	제2생활관	1,535㎡	
	제3생활관	468㎡	